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공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제과점을 창업하고 경영하려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아무것도 몰라 제일 막막하게 하는 것은 법과 세무에 관련해서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다. 권리 앞에 당당한 제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활 속의 법률 상식 노트를 펼쳐보자.

글 · 정동현 세무사 정동현세무사사무소 02)876-2376
 부동산 자문 · 공재옥 부동산컨설턴트 (주)대신코리아부동산 02)2695-0072
 법률 자문 · 문교석 법무사 M.K법무사사무소 02)874-9870



정리 · 김미선 기자 | 일러스트 · 홍승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마다 꼬박꼬박 하고서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바탕으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을 알아본다.

3개월마다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의 분류

세법에서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제과점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진다.

간이과세자 : 전년의 매출합계액이 4천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기타공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출분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공동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대손 처분받은 세액
(-)	
경감·공제세액	▶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 공제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과세기간 및 신고유형

과세기간		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1.1 ~ 3.31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4.1 ~ 6.30	확정신고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7.1 ~ 9.30	예정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	10.1 ~ 12.31	확정신고	확정신고

알아둘 것!

- ① 제과점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사업자 중 신규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징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를 생략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신고 해당 분기의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년에 딱 한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때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부동산임대소득 ④사업소득 ⑤근로소득 ⑥일시재산소득 ⑦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한다.

소득공제

제과업의 종합소득세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하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사업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소홀히 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뒷장의 <표>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

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매출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한 증빙 서류

예

사업자대출이자 및 부동산담보대출이자 비용 대출통장 및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 증빙 서류

예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부양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필수
- 장애자 공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 동거 입양자 기본공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기부금 공제 기부금(교회 헌금 등) 지출 영수증 ㉔

〈표〉 소득공제 요건과 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83.1.10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3.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여자('48.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 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경로 우대자 ('38.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 원
특별공제	기부금공제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된 단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	⇨ 전액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50% 한도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공제기부금의 50%)의 10% 한도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제외)	⇨ 당해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소급분 납부보험료는 제외)
	개인연금저축공제	본인명의 2000.12.31 이전 가입분불입액의 40%	⇨ 연간 72만 원 한도
	연금저축공제	본인명의 2001.1.10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 원 한도
	투자조합출자공제	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출자액의 30% 02.1.10이후 출자(투자)분의 15%	⇨ 소득금액의 70% 한도 ⇨ '02.1.10이후 출자(투자)분 50%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가입시 (1인당 5천만 원 한도)	⇨ 해당년도 불입액의 5 % ⇨ 전년도 불입액의 7 % -1년(2년)이내 해지 혹은 -주식보유비율(70%)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초과시 공제세액추징